

# 1인 노인가구 대상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강원광역자활센터(이하 “협약 기관”)는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1인 노인가구 대상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내용)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 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①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요자 중 1인 노인가구 대상 생활 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 희망자 발굴
- ② 1인 노인가구 대상 생활 맞춤형 주택개조 서비스 제공
- ③ 1인 노인가구 대상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 ④ 협력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역할 및 진행) 본 협약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협약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한 합리적 역할 분담으로 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세부사항은 기관별 제규정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제4조 (비밀 유지) 협약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추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협약의 목적 외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협의 조정) 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6조 (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협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이후에는 자동 종료된다. 단, 협약 기관 간 합의 하에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예산) 본 협약에 의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기관별 자체 예산으로 한다. 기타 부대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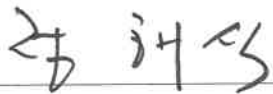
제8조 (변경 및 해지) 협약 기관은 상호 협의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본 업무협약에 대한 합의 개정 또는 임의 해지할 수 있다. 단, 업무협약의 개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 준수) 본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를 5부 작성하여 각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9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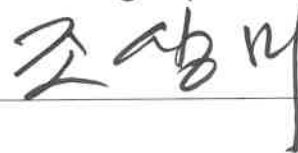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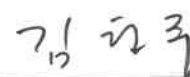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KHEPi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이은영



 강원광역자활센터

이경희

